

##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2. 7. 15-----사하구청장

나.회부일자: 2002. 7. 15

다.상정일자: 제10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 7. 30)상정,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이정상 민원봉사과장)

#### 가.제안이유

- 을숙도문화회관의 신설에 따라 사업소의 장의 공인 비치사용 조항 신설
- 용어의 정의에 맞게 「소속행정기관장」을 「직속행정기관장」으로 변경
- 추후 민원발급에 대비하여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의 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란 신설

#### 나. 주요내용

- 사업소의 장의 공인 비치 사용 조항 신설(제1조, 제2조 제1항, 제6조 제2항)
- 직속행정기관장으로 용어 변경(제1조,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조 제7항, 제6조 제2항)
-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의 민원실전용 공인 비치 조항 신설(제2조 제3항)
- 사업소의 공인관수자 지정(제13조 제1항)

### 3.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제104조(직속기관)
- 지방자치법제105조(사업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 사무관리규정 제35조(종류및비치), 제36조(특수관인), 제41조(공인)
- 사하구 공인조례 1조(목적),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13조(공인의 관수자)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소속기관과 직속기관의 용어 정의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 을숙도문화회관 직제 신설에 따른 사업소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또한 직속행정기관장(보건소장)과 사업소장(문화회관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하였으나
- 개정요구 조례안 제2조 제3항 내용중 민원실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 구청장 직인은 “민원실 전용”으로 직속 행정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직인은 “민원사무 전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야만 사하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과 부합될 것으로 보이며
- 공인조례 제4조2항 내용중 “별표1” 공인의 규격에 있어서 1항 나호의 “동장, 소속행정기관장”을 “직속행정기관장, 동장”으로 수정하고
- 공인조례제15조 제3항 내용중 “구청장, 동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을 “구청장,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으로 수정하여야만 개정요구 조례안 내용과 일치될 것으로 판단됨.

#### 5. 질의답변요지:생략

#### 6. 토론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붙임: 수정안 대비표

### 부산광역시시하구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공인의비치사용)</p> <p>①~② 생략</p> <p>③구청장,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원실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제2조(공인의 비치사용)</p> <p>①~② 생략</p> <p>③구청장,직속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 동장은-----</p> <p>-----</p> <p>-----</p> <p>-----</p> <p>-----</p> <p>-----</p> <p>-----</p>	<p>제2조(공인의 비치사용)</p> <p>①~②</p> <p>③구청장,직속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 동장은-----</p> <p>-----</p> <p>-----</p> <p>-----</p> <p>-----, 이 경우에는 <u>구청장 직인을 민원실 전용으로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동장직인은 민원사무전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u></p>
<p>제4조(공인의 글씨와 규격)</p> <p>①~② 생략</p> <p>별표1 공인의 규격</p> <p>1. 행정기관장의 직인</p> <p>가.구청장</p> <p>나.동장,소속행정기관장</p>		<p>제4조(공인의 글씨와 규격)</p> <p>①~② 생략</p> <p>별표1 공인의 규격</p> <p>1. -----</p> <p>가.-----</p> <p>나.<u>직속행정기관장, 동장</u></p>
<p>제15조(공인의 날인)</p> <p>①~②생략</p> <p>③구청장,동장,소속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p>		<p>제15조(공인의 날인)</p> <p>①~②생략</p> <p>③구청장,직속행정기관장,사업소의 장,동장-----</p>